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 전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의 정의, 담당기구 및 처리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조직)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희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또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2. 성차에 기반한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환경 또는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
 3. 1호 또는 2호에 불응·반박함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및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
- ③ 성매매라 함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 교직원, 학생, 시간강사 등 전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 4조(사건당사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사건당사자(이하“당사자”라 한다)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

- ②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및 기타 당사자를 특정하여 파악 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성폭력의 신고, 조사,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할 권리
2.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 또는 거부할 권리
3. 특정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 ④ 당사자의 대리인 및 사건상황을 신고한 사람도 제1항과 제2항에 준거한 보호를 받는다.

제 5조(전담기구) ① 이 규정에 관련된 업무는 학생처, 학생과에서 전담한다.

- ② 학생처는 신고 된 사건을 접수하여 필요한 상담 및 조사를 수행한다.

제 6조(신고인과 신고기구) ①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사건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서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 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학생과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기타 교수 대표기구, 직원 대표기구, 각급 학생회 등에 접수 된 사건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되, 이 경우는 최종적으로 신고사항 일체를 학생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처리위원회

제 7조(성희롱·성폭력·성매매 처리위원회의 설치) 이 규정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타 위원은 학생처장은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생위원을 2인으로 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단, 학생위원은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참여한다.

제 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처에서 조사·보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또는 결정한다.

1. 피해자에게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
2. 가해자에 대하여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공개사과, 봉사 등을 명령
4. 기타 사건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및 결정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0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조(동조자에 대한 처벌)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는 그 동조자를 이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 12조(처리기간) 이 규정에서는 처리하는 사건은 발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사건 으로 하며, 신고 후 2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 13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